

2016년 서수면 감사결과

지적내용 요약 및 세부조치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p>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52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8조 및 제79조에는 출납원은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별지 제82호 서식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해야 함에도 □ 서수면에서는 양곡 등 복지업무와 관련한 수납내역 ○건이 발생했음에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지도 않았음. 또한 '15. 9. 10~'16. 5. 9.까지 양곡신청 대금을 담당자가 현금보관(○○천원)하고 있었으며, 이자수입 ○원을 반납처리하지 않았음 	<p>행정상 : 시정</p>
<p>2. 신명카드(교통카드)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52조의 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감사일 현재까지 교통카드 충전 계좌 입출금내역을 지방재정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고, 2013~2016년 감사대상 기간 발생한 이자수입 ○○원과 마이비, 캐시비 충전수수료 ○○원, 총 ○○원을 미반납 □ 그리고 0000.00.00.이후로 주민센터에서 카드기 고장으로 더 이상 카드충전기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카드기 반납 및 통장을 해지(잔고 ○○원 반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p>행정상 : 시정</p>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p>3.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출업무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52조에 따르면 지출원(읍면동 경리업무계장)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나, □ 신용카드 결제대금 지출시 정당한 채권자 여부, 납부액, 납부기한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총 4회, 연체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개인이 계좌로 입금하여 처리하였음 	<p>행정상 : 주의</p>
<p>4. 가로환경정비 국화 식재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0.00.00. 가로환경정비용 국화를 구입하면서 제출받은 1인 견적서의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해당 절차 이행없이 1인 견적서의 견적금액 100%를 적용하여 구입계약을 체결하였고, □ 또한 꽃길조성 등을 위한 장소선정, 식재종류, 화분에 식재될 꽃소요량, 식재인원, 사후관리 등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계획서와 결과 보고한 내역이 없으며, 단지 증빙자료로 청사주변 꽃 식재 사진 3컷만 지출서류에 첨부하였음 	<p>행정상 : 주의</p>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p>5.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내역 공개업무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6항에 따라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여야 하나 □ 감사기간 중 2013년과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에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내역을 공고·게시하지 않음 	<p>행정상 : 주의</p>
<p>6. 복지대상자 연간 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따르면 시장은 수급자 및 이들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주민생활지원과-414(2016.1.7.)호 「복지대상자 지원강화를 위한 2016년 연간모니터 추진계획」을 각 읍·면·동에 안내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2016년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연간 방문상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p>행정상 : 주의</p>
<p>7. 장애등급 결과통지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담당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등을 진단 내역에 입력하고 서류 이송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전산 송신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심사의뢰 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서 심사결과 확인 후 즉시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공문에 행복 e음의 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0000.00.00. ○○ 외 ○건 중 ○건은 공문에 의하지 않고 우편발송(○건)하거나 직접 전달(○건)하였으며, 그 외 ○건은 장애등급 결과통지를 최소 7일에서 최대 48일까지 지연처리 하였음 	<p>행정상 : 주의</p>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p>8. 방역소독 관련 증빙자료 작성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를 위하여 정부의 조기 집행 정책으로 0000.00.00. 관내 서수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유류(휘발유, 경유)를 보관하면서 방역할 때만 유류를 사용하였으므로 수량을 품목(휘발유, 경유)별로 상세하게 기입한 유류전표를 주유소에서 발급받아 비치하여야 하고, 당해 유류전표를 근거로 방역소독 유류수불대장과 방역소독일지를 기록·관리하면서 방역용 유류비를 정산하여야 하나, □ 주유소에서 발행한 유류보관증을 첨부하고, 유류 사용에 대한 수불대장은 기록을 하였으나, 주유전표(품목별 사용한 유류수량)가 없어, 실제 방역소독에 사용된 품목별 유류사용량과 사용일자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없음 	<p>행정상 : 주의</p>
<p>9. 쌀소득보전직불제 직불금 지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타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는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 서수면에서는 ○○리 ○○번지의 경우에 0000. 00. 00.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이므로 2015년도부터 쌀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2015년에 고정형과 변동형 직접지불금 ○○원을 지급함 	<p>행정상 : 시정</p>
<p>10. 농지원부 관리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나, □ 한세대에 농지원부 2개 이상 농가 ○건(○호) 외 3건의 변동원인이 발생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 까지 중복자료 삭제, 경작면적 1,000㎡ 미만 농가 정리 등의 변동사항 처리를 소홀히 함 	<p>행정상 : 시정</p>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p>1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자가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재발급 수수료로 5,000원을 징수하고, 재발급신청서에 수입증지로 인증하여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 0000.00.00. 재발급 신청자 ○○ 외 ○건의 경우에 면제대상자가 아님에도 수수료 5,000원을 징수하지 않아 총 ○○원의 수입증지를 날인하지 않고 처리함 	<p>행정상 : 시정</p>
<p>12. 주민등록 일제정리(사실조사)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나, □ 2013~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하면서 1차 세대별 명부를 통한 주민등록 전수조사시 신고 의무자인 세대주 확인이나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다면 이장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공란으로 남겨 두거나 이사 또는 전출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2차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마무리한 건이 다수 있으며, □ 또한 2차 사실조사를 실시한 경우 사실조사서에 해당 이장이나, 담당자 확인 없이 주민등록 담당자의 확인만으로 사실조사서를 작성한 건이 있음 	<p>행정상 : 주의</p>
<p>1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서수면은 상시 근무인원이 10명 이하이므로 연 1회 자체소방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 2013년에는 실시계획만 수립하고 증빙자료(결과보고, 사진 등)가 없어 실제 실시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2014년에는 소방훈련 계획없이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대체하였으며, 2015년에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p>행정상 : 주의</p>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p>14. 물품관리대장 등재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은 모든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읍·면·동장) 및 물품출납원(읍·면은 주민생활담당주사, 동은 총무업무담당) 등으로 하여금 물품 관련 장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 0000.00.00. ○○ 외 2건을 구입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를 누락하였음 	<p>행정상 : 시정</p>
<p>15. 관용차량 관리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 회계과-4917(2014.11.26.)호 공문에 따라 관용차량 관련 새올행정시스템에 운행일지, 정비기록, 제세공과금, 유류수불사항 등의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나, □ 감사일(‘16.5.12) 현재까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하지 않고 있고, ‘13. 10. 31~‘16. 3. 16.까지 ○건의 차량정비 내역을 새올행정에 등록하지 않음 	<p>행정상 : 시정</p>
<p>16. 헬스장 전기온수기 설치공사 공사감독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수면에서는 ○○ ○○ ○○ 공사를 0000.00.00. (유)○○와 총 ○○○○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음 □ 설계내역상 ○○○○ 설치에 ○○ 1대 설치시 노무비가 보일러공 ○○원, 비계공 ○○원을 계상하였으나, 본 공사는 비계공의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음. 또한 당초 보일러에서 급수배관까지 스테인레스 주름관 설치로 총 길이 60m를 계상하였으나 실제 시공된 것은 50m불과하여 감독공무원이 인건비와 설계서상 재료의 소요량을 최종 확인하고, 이를 설계변경 하여야 함에도 변경하지 않아 총 ○○원을 부당 지출하였음 	<p>행정상 : 시정</p>

지적내용 요약	처분조치(안)
<p>17. 2013년 지역공동체 지붕개량사업 정산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수면에서는 0000.00.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유)○○과 총 ○○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음 □ 노후슬레이트 철거를 위하여 분진망과 강관비계 설치(200㎡)에 총 ○○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시공된 면적은 서수면 ○○ ○○의 가옥이 45㎡(15m×3m), 서수면 ○○ ○○ ○○의 가옥이 36㎡(12m×3m)로 총 81㎡시공되었으며, 당초 설계당시 인근주택의 피해를 감안하여 분진망이 시공되어야 했으나 공사업체가 시공편의를 위하여 119㎡의 비계 및 분진망을 설치하지 않음 □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정산을 하여야 하나, 정산하지 않고 총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p>행정상 : 시정</p>
<p>18. 폭설피해 응급복구공사 안전대책 미수립 및 업체선정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수면에서는 0000.00.00, 00.00. 관내 폭설로 주택 및 도로의 수목이 전도되어 응급복구가 필요하여, ○○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음(총 ○○천원) □ 주요공정은 전도된 소나무의 위험수목 제거 및 수목 정리로서 인력을 활용한 공정이 주가 되는 것이므로 공사인부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안전장구 착용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공사임 □ 그러나, 장비대여 업체와 계약을 함으로써 산재, 고용보험료 적용을 제외하였고, 위험수목 제거에 대한 전문공정(조경공) 노임단가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공사의 특성상 높은 곳에서의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업체선정 및 안전사고 대책을 소홀히 하였음 	<p>행정상 : 주의</p>